

2026년 하반기 전략품목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(안)

1. 사업 개요

☐ 사업 목적

- 권역·국가별 수출 전략품목 발굴 및 맞춤형 마케팅 집중 지원을 통한 실질적 농식품 수출 성과 제고

☐ 지원대상 : 수입바이어, 유통업체 등

☐ 추진유형 : 주력품목, 도전품목

- K-푸드 수출기획단 민·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‘중화권 K-푸드 수출 전략품목’을 바탕으로 주력 및 도전품목 선정

☐ 지원내용 :

구분		주요내용
지원비율	바이어·유통업체	[바이어 주관] 배정예산 한도 내 정산승인액의 80% * 해외지사 직접 주도하에 발굴·판촉 추진하는 신규 유통매장(플랫폼) 한정 100% 지원
		[대기업 제품 단독판촉] 배정예산 한도 내 정산승인액의 50% * 대기업(공시대상기업집단) 리스트 불임 참조
지원한도		50~100백만원
판촉의무	바이어·유통업체	①주력품목 : [가공] 지원금액의 300% 이상 수입 [신선] " 200% 이상 수입
		②도전품목 : [가공·신선] 지원금액의 150% 이상 수입

☐ 사업 수행기간 : ~ '26. 11. 30(월) 이내

2. 추진 계획

① 품목(사업) 발굴

- (공통) 2026년 중화권 K-푸드 수출 전략품목* 활용, 해당 품목군에 속하는 확정 품목으로 발굴

* ex) 발효식품 → 김치, 전통주 등 / 신선과일 → 배, 포도 등

- (주력) 중화권 K-푸드 수출 전략품목 기반으로 중국지역 주력품목 발굴
- (도전*) 권역별 K-푸드 수출 전략품목 포함 신선·가공식품 전반을 대상으로 해외지사에서 육성을 희망하는 도전품목 발굴

권역명	전략품목군	주요품목(예시)
중화권	③ 프리미엄 한식재료	▪ 장류 기반 소스, 한우, 디저트 등
	④ 건강기능식품	▪ 이너뷰티, 프로바이오틱스, 콜라겐, 비타민 젤리 등

②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

〈 사업계획 수립 관련 유의사항 〉

- 사업 건당 지원한도는 50백만원을 기본으로 하며, 최대 지원한도는 100백만원
 - 지원한도 이내 신청 사업 예산의 경우 예산을 조정하지 않으며, 한도 초과 신청 사업 예산은 선정위원회를 통해 예산 조정될 수 있음(최대 지원한도 초과 불가)
 - * 지원한도 초과 예산 사업 제출 시 본사 협의 및 초과예산 계획 사유 명시 필수
- (필수) 바이어·유통업체 아래 절차 준수하여 선정
 - 선정절차(안) : 신청접수 및 유효사업자 검증 → 사업계획 및 예산 적정성 검토 → 선정
 - * 접수서류 : 사업자등록증, 해당 품목 취급 증빙(공식 수입신고 서류 또는 구매관련 증빙)

□ 제출방법 : 행사권역 aT 관할 해외지사로 이메일 신청 * 접수 후 유선 확인 필수

□ 제출서류

○ 품목추천서[별지양식-1] 및 사업수요조사서[별지양식-2] 제출

* 접수서류 : 사업자등록증, 해당 품목 취급 증빙(공식 수입신고 서류 또는 구매관련 증빙)

□ 접수기한 : 2026. 7. 3.(금) 16:00 (중국시간)

□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:

권역	aT 해외지사	연락처
중국(화북, 서북, 허난성 및 서남 일부·쓰촨성·충칭)	베이징지사	beijingat@at.or.kr 86-10-6410-6120
중국(화동, 화중, 화남 및 서남일부·윈난성·구이저우·시짱)	상하이지사	shanghaiat@at.or.kr 86-21-3256-6325
중국(동북3성·랴오닝·지린·헤이룽장), 몽골	다롄지사	dalianat@at.or.kr 86-411-3960-3361 82-070-5223-4368(몽골)
중국(산둥성)	칭다오aT물류유한공사	qingdao_logistics@at.or.kr 86-532-6696-2229
중국(홍콩, 마카오, 광둥성, 대만)	홍콩지사	charles.kim@at.or.kr 852-3704-6903

붙임 1 전략품목육성지원사업 정산기준

*2026년 온·오프라인 해외판촉 정산기준 적용

□ 공통사항

- 모든 사업비용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한하며, 자산성 항목(유형·무형) 구매비용 불인정
- 항목별 정산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에 aT 협의·승인 후 추진
- 사업비 정산을 위해 추가 증빙서류 요구 시 제출 필요
- 송금증 등 증빙서류에 환율이 명시되어 있을 시 해당 환율을 적용하며, 별도 증빙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 등 기간별 평균환율 적용

□ 항목별 세부기준

항목	세부내역	제출서류
입점 및 장치 관련 비용 * 온라인 제외	○ 판촉행사장 임차비 및 입점수수료 - 품목등록비, 점포Listing Fee 이외의 단순 매출수수료는 제외 ○ 판촉 관련 시식대·행사장 구성·이벤트와 관련된 장치 제작 설치비 및 임차비 [오프라인 한정] ○ 주류마켓 대상 수출전략품목 신규입점 성공에 따른 판촉의 경우, 식품중개인 기획·입점 관련 비용(20% 한도)	○ 유통업체(매장) 발행 증빙서 또는 입차계약서(금액표시) ○ 관련 증빙서 및 실물 사진 ○ 식품중개 활동 내역 납품 계약서 등 관련 증빙 * 신규입점한 유통매장이 해당 국가 10위 이내 유통체인(또는 매장 수 100개 이상)일 경우 지원 한도 제한 없음(100%)
홍보 관련 비용	○ 행사관련 이벤트 용역, 미디어 제작 및 광고, 현수막, 전단지, 인터넷 배너 제작, SNS, 온라인 시식 등 판촉 관련 행사 및 제품 홍보에 집행된 비용 * 오프라인 판촉 행사로 온라인몰 연계 시 행사 기간, 매장명 등 오프라인 행사 정보 제공 필요 ○ 증정품+경품+포인트+쿠폰+배송료 합산 금액은 전체 배정 예산의 25% 한도 내 지원 * 증정품·경품은 한국 농식품(꾸러미) 권장	○ 홍보내역 및 송금증 등 관련 지출증빙 ○ 제작실물 또는 실물사진 ○ 포인트, 쿠폰 등 마케팅 내역 및 관련 증빙 ○ 증정품 관리대장(수량명시), 사진 첨부 * 경품행사 진행시, 사전에 행사계획 제출 및 협의 필요 ○ 판촉 홍보물 제작 시 K-Food 로고 활용 권장 * aT 디지털 아카이브 > 일반파일 게시물 활용 * K-Food 로고 활용 표준 디자인, 콘텐츠는 현지 여건에 맞게 활용
	[온라인 한정] ○ 온라인 매장 내 홍보(팝업, 배너 등) 관련 제작 및 홍보비용 ○ 행사 관련 매체광고비, SNS 활용 광고비 등	○ 홍보내역 및 송금증 등 관련 지출증빙 ○ 온라인 매장 내 제품 사진(캡처화면) ○ 온라인 매장 내 홍보 현황 사진(캡처화면) ○ 매체광고 내역 등 행사사진(캡처화면) ※ 모든 증빙은 온라인 매장에서 발급된 증빙을 원칙으로 함

시식 행사 관련 비용 * 온라인 제외	○ 행사관련 홍보·판촉요원 고용관련 비용 (통역포함) ○ 국가별 지원한도(1일/1인) 내 지원 ○ 가급적 시식행사를 포함하되 불가피하게 시식행사가 불가한 경우 자세한 사유 명시 ○ 시식용 식품 비용은 전체 배정 예산의 10% 한도 ○ 시식관련 비품은 소모품 구매가 원칙이며 자산성 비품의 구입은 불허	○ 판촉요원 운영확인서 제출 - 판촉요원 직고용시 개인별 대금수령증, 근무매장, 근무일수, 지급액, 개인별 활동사진 등 ○ 시식용 식품 증빙은 행사기간 동안 유통매장에서 직접 구입한 영수증 또는 납품증명서(유통매장 확인필) 제출 *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 ○ 행사매장 시식행사 사진 첨부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

* 세부기준은 현지 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본사 협의가 필요함

* 영수증의 수신자가 지원업체와 상이한 경우 어떤 관계인지 결과보고서에 명기

□ 인건비 지원한도 및 증빙 서류

○ 판촉요원 인건비 지원 한도 USD 200 (1일 상한액)

※ 판촉 행사 판촉요원 운영시간이 통상 근로시간보다 적을 경우 상한액 감액 적용 가능

○ 예외적으로 인건비 한도에서 코스트코 등 유통매장 정책상 특정 에이전시 사용이 강제되는 경우 전문 도급업체(CDS, Advantage 등) 이용 견적서를 그대로 인정 가능

* 사유 : 비용 절감보다는 행사 품질(Quality)과 인력 안정성(Stability)이 우선되어야 함

* 주관사가 벤더 선택 권한이 없고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비용임을 반영함

○ 일반 판촉요원과 별도로 '전문가(셰프, 통역, 공연자)' 직군에서는 현지 시장단가(Market Rate) 견적을 바탕으로 별도 인정

□ 지원금액

○ 해외판촉사업 결과 통보문에 명시된 금액을 최종지원액으로 하며, 정산 대상 집행비용의 80% 지원 원칙

* 대기업([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]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) 제품 단독판촉은 실 집행비용의 50% 지원

* 유통업체 직접연계 판촉은 실 집행비용의 100% 지원

○ 단, 사업의무액을 미달성할 경우, 달성 비율(%)에 따라 최종 지원액 감액

※ 최종지원액 = [정산 승인액(①×②) × 사업의무액 달성 비율(③)]

☞ (① 판촉사업 수행업체 실 집행비용 × ② 지원 비율) × ③ 사업의무액 달성 비율(%)

· 정산 승인액(①×②)은 당초 배정된 국고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판촉사업 수행업체 실 집행비용은 세부 지원기준에 따라 aT가 최종 승인한 집행비용을 의미

* 사업의무액 달성비율(%)은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(예 80.488%→80.48)

○ 시식식품, 홍보비용은 전체 배정예산의 한도 내 지원

* (예시1) 1억원 예산 배정시 시식식품비는 1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(시식식품비 30백만원 지출시 10백만원 지원 / 시식식품비 5백만원 지출 및 80% 지원시 4백만원 지원)

* (예시2) 1일/1인 EU권역 인건비 EUR400 지출시 EUR300까지 지원(EUR300 인건비 지출하는 경우 지원비율(80%) 적용하여 EUR240 지원 등)

□ 지원한도 및 사업의무액 달성 여부에 따른 최종지원액 적용예시

[사업의무액 달성시] 정산승인액 ≥ 배정예산		[사업의무액 미달성시] 정산승인액 ≥ 배정예산	
배정예산 30백만원	지원 비율 80%	배정예산 30백만원	지원 비율 80%
실집행금액 60백만원	사업의무액 120%	실집행금액 60백만원	사업의무액 70%
= (60 * 0.8 = 48백만원 지원한도 30백만원 적용) → 초과 달성이므로 달성 비율 100% 적용 = 30백만원 * 1 = 최종지원액 30백만원		= (60 * 0.8 = 48백만원 지원한도 30백만원 적용) → 달성 비율 70% 적용 = 30백만원 * 0.7 = 최종지원액 21백만원	
[사업의무액 달성시] 정산승인액 < 배정예산		[사업의무액 미달성시] 정산승인액 < 배정예산	
배정예산 30백만원	지원 비율 80%	배정예산 30백만원	지원 비율 80%
실집행금액 20백만원	수출의무액 200%	실집행금액 20백만원	수출의무액 30%
= (20 * 0.8 = 16백만원 정산지급액 16백만원 적용) → 초과 달성이므로 달성 비율 100% 적용 = 16백만원 * 1 = 최종지원액 16백만원		= (20 * 0.8 = 16백만원 정산지급액 16백만원 적용) → 달성 비율 30% 적용 = 16백만원 * 0.3 = 최종지원액 4백 80만원	

사업의무액

구 분	내 용	비 고
수입업체 [공통]	○ 판촉사업 선정 시 업체가 제출한 목표수입액(사업의무액) - 업체가 제출한 목표수입액을 사업의무액으로 활용(사업예산의 2~3배 이상(가공 3배, 신선 2배)을 사업의무액으로 제시) * 김치·인삼은 가공에 포함 - 업체가 제출한 목표수입액(사업의무액)은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배정받은 예산 규모에 맞춰 감액 * 업체 신청예산 50백만원, 목표수입액 200백만원이고, 최종 배정예산이 20백만원일 경우, 최초 목표 비율(4배)에 맞춰 80백만원으로 사업의무액 감액 - 공식 수입신고서 제출하되, 인보이스 제출 시는 B/L 첨부 * 불가피하게 수입 증빙 제출이 어려울 시 협의 후 수출신고필증(야행완료) 제출 가능 - 벤더(경소상) 판촉의 경우에도 납품받은 사업자(거래관계 수입상)의 수입대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과 수입상으로부터의 구매영수증 동시 제출 시 인정하며 거래관계 수입상의 수입(대행)증빙은 판촉기간 전 3개월 안에 발급된 것에 한해 인정 ○ 행사기간 매출실적 제출 필수(온·오프라인 공통)	<제출증빙> 수입허가(신고)서 또는 수입증빙서 수입자(구매자)와 주관사명이 일치해야 함
유통매장 직접연계 [온라인]	○ 배정예산의 2~3배 이상 수입실적 * 유통매장 또는 플랫폼이 직접 수입하지 않아 수입증빙 제출이 어려운 경우 행사기간 매출실적을 수입실적으로 활용 - 상품명, 개수, 단가, 총매출액 등이 포함된 매출실적 증빙 제출 * 현지 온라인몰 정책 등으로 인해 온라인몰 발행 증빙이 불가할 경우 본사 사전협의 필요	유통매장 직접연계 판촉시 직접 수입하지 않는 경우 유통매장 발행 매출 증빙
유통매장 직접연계 [오프라인]	○ 배정예산의 2~3배 이상 수입실적 * 유통매장이 직접 수입하지 않아 수입증빙 제출이 어려운 경우 행사기간 매출실적을 수입실적으로 활용	
실적 인정기간 및 환율적용 [공통]	○ 수입실적 : 행사기간 전 60일 + 행사기간 ○ 수출실적 : 국가별 운송기간 + 행사기간 전 60일 + 행사기간 환율 : 해외판촉 행사기간 동안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전신환 송금(보내실 때) 평균환율 적용, 단 비고시환율 국가는 현지 중앙은행의 원화 환산 환율 평균환율 적용	공통사항

* 세부기준은 현지 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본사 협의가 필요함

□ 국가별 운송기간 개선(안)

○ 수입실적 : 행사기간 전 60일 + 행사기간

○ 수출실적 : 중화권 운송기간(검수기간 포함) 20일(+5일) + 행사기간 전 60일 + 행사기간

* 신선 품목 및 냉장 운송 품목 단독 판촉도 행사기간 전 60일+행사기간으로 통일

○ 예외 인정 제도 도입

- 다음 사유로 운송기간 또는 검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, 증빙 제출 시 예외적으로 실적 인정기간에 포함함

* 사례(예) : 항만 혼잡, 공휴일 등으로 인한 선박 스케줄 변동, 기상 악화(태풍 등), 선박 회항 또는 항차 취소, 현지 검역·통관에서의 불가피한 지연 등

□ 기타

○ 판촉행사계획 보고 이후 행사내용(행사매장, 행사품목, 행사기간, 판촉일수 등)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, 해외판촉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변경사항을 사전 보고

○ 판촉 추진지역은 반드시 관할지역을 포함해야 함

○ 관할 지역 외 판촉 추진 시 해당 관할지사와 판촉 사전협의 필수
(바이어 및 유통매장 중복지원 가능성 확인)

○ 바이어 지원의 경우 타국산 제품 혼입 시 판촉 지원 원천 불가

○ 행사국가, 매장, 품목은 변경 불가가 원칙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aT(해외지사)의 승인을 받아야 함

붙임 2 대기업(공시대상기업집단) 지정 리스트

□ 대기업 :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92개사('25.5.1 기준)

- *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목록 변경 시, 해당 변경 목록을 적용
(표 내 식품 관련 기업 음영 처리)

구분		기업 집단명
공시 대상 기업 집단 (92)	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(46)	삼성, 에스케이, 현대자동차, 엘지, 롯데 , 포스코, 한화, HD현대, 농협, 지에스, 신세계 , 한진, 케이티, 씨제이 , 엘에스, 카카오, 에이치एम, 두산, DL, 중흥건설, 셀트리온, 네이버, 에쓰-오일, 미래에셋, 쿠팡, 현대백화점, 한국엔컴퍼니그룹, 부영, 영풍, 하림 , 효성, 장금상선, SM, 에이치디씨, 호반건설, 두나무, 케이티앤지 , 코오롱, 케이씨씨, DB, 넥슨, 오씨아이, 엘엑스, 세아, 넷마블, 이랜드
	非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(46)	교보생명보험, 한국지엠, 다우키움, 금호석유화학, 대방건설, 태영, 삼천리, KG, 에코프로, HL, 동원 , 아모레퍼시픽 , 태광, 크래프트, 글로벌세아, 한국항공우주산업, 엠디엠, 소노인 테내셔널, 애경, 동국제강, BS(舊 보성), 삼양 , 엘아이지, 중앙, 유진, 고려에이치씨, BGF , 대광, 반도홀딩스, 대신, 오케이금융그룹, 하이트진로 , 농심 , DN, 현대해상화재보험, 신영, 파라다이스, 아이에스지주, 하이브, 한솔, 삼표, 사조, 원익, 빗썸, 유코카캐리어스, 영원

- * [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]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제품 단독 취급 시 50% 지원
- * 단,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(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)에 따라 **농협계열사 대기업 미적용**
- (참고-제7항) 중앙회 계열회사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외의 다른 법률에서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경우 중앙회 계열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.